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52
----------	-------

발의연월일 : 2026. 7. 14.

발 의 자 : 김준환 · 김원이 · 박 정
채현일 · 김남근 · 김교홍
송재봉 · 부승찬 · 전용기
손명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로 하여금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건으로 인해 개인 민감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모의 해킹 결과 40개 기관에서 457건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공공기관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그럼에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량의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현행법상 명시적인 보안대책 수립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공공기관도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등).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기관의”를 “행정기관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기관의”를 “행정기관등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u>중앙선거관리위원회</u>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① ----- ----- <u>중앙선거관리위원회</u> , 행정부 및 공공기관은----- ----- ----- ----- -----.
② <u>행정기관의</u>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u>행정기관등의</u> ----- ----- ----- -----.
③ <u>행정기관의</u>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때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u>행정기관등의</u> ----- ----- -----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